

#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 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합 계		-	-	-	-	-	-
지방세수입		-	-	-	-	-	-
세외 수입	경상적	-	-	-	-	-	-
	임시적	-	-	-	-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	-	-	-	-	-
	-	-	-	-	-	-	-
보전 수입등	보전수입등	-	-	-	-	-	-
	-	-	-	-	-	-	-

## 2. 세 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4천 5백만원 대비 3.1%(16,701천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545,080	545,080	561,781	16,701	16,701	3.1	3.1	
행정 관리	소 계	545,080	545,080	561,781	16,701	16,701	3.1	3.1
	행정운영경비	118,101	118,101	103,751	△14,350	△14,350	△12.2	△12.2
	채무활동	0	0	0	0	0	0	0
	사업비	426,979	426,979	458,030	31,051	31,051	7.3	7.3
교 부 금	0	0	0	0	0	0	0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3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18,101	118,101	134,802	16,701	16,701	14.1	14.1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0	0	31,051	31,051	31,051		
기본경비	118,101	118,101	103,751	△14,350	△14,350	△12.2	△12.2

## II. 검토의견

### 1. 세출예산 검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본경비”중 ‘국내여비’(1천2백50만원)를 감액편성하고,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에 ‘사무관리비’(3천1백만원)를 증액조정하려는 것임.

#### 2023년도 제1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총 계	26,880	43,581	16,701	
세출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 사무관리비	0	31,051	31,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경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대시민 홍보비</li> <li>◦ 사무관리비(0백만원→31백만원)</li> </ul>
	기본경비 / 국내여비	26,880	12,530	△14,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차량 임대(총무과) 및 구입 예정으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가 예측되어 감추경</li> <li>◦ 국내여비(26,9백만원→12.5백만원)</li> </ul>

#### 가.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신규사업)

- “현장민원 점검 및 평가” 사업은 현장민원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구의 현장민원 담당자 대상 간담회·워크숍을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 기관·공무원·자치구 시상 등을 하기 위해 3천1백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1,051	(x-) 0	(x-) 31,051
사무관리비	(x-) 31,051	(x-) 0	(x-) 31,051

### 〈예산과목 증감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직원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대시민 홍보 = 27,880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역량강화 교육 2,880천원, 간담회 5,000천원, 홍보비 20,000천원</li> <li>○ 평가위원회 운영 = 3,000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외부 평가위원 수당 200,000원*5명*3회 = 3,000천원</li> <li>○ 현장민원 시상식 개최 = 171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 상장 제작 5,500원*31개 = 171천원</li> </ul>
	<p>(증감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민원의 선제적 신고 및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장민원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간담회·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대시민 홍보, 우수기관·공무원·자치구민 표창 등을 통해 현장민원 활성화</li> </ul>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민원의 선제적 신고 및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증가하여 현장민원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간담회·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대시민 홍보, 우수기관·공무원·자치구민 표창을 통해 현장민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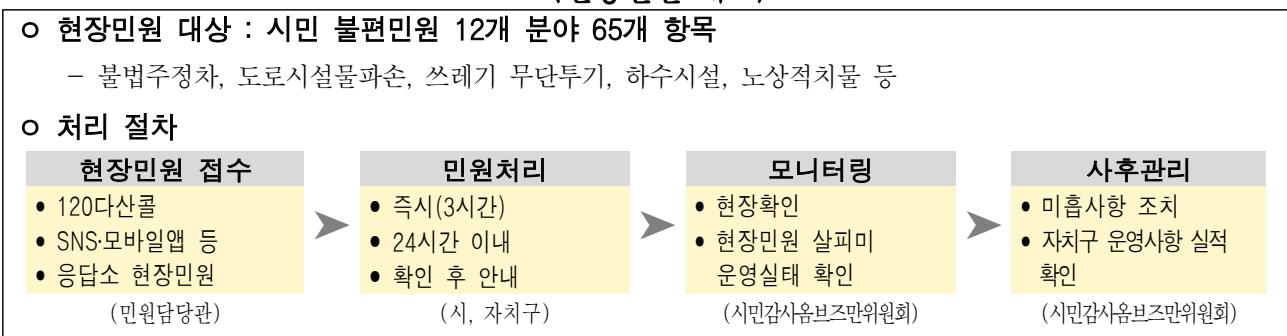
※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증액 편성으로 현장민원 담당자 대상 감담회·워크숍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 기관·공무원·자치구 시상(우수 기관 3, 우수 공무원 3, 25개 자치구 우수 살피미 각 1명씩 총 31) 등을 통하여 현장민원 신고실적이 계속해서 감소(2018년 118,406건 → 2022년 24,818건)하는 추세가 완화된다고 현장민원 살피미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장민원 살피미 5개년 신고실적〉

신고실적				
2018	2019	2020	2021	2022
118,406	83,746	51,230	40,896	24,818

- ※ ‘현장민원’이란 120다산콜,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의미함.
- ※ 현장민원 업무는 불편민원을 점검·신고하는 살피미 채용 및 관리와 민원사항 처리는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현장민원 접수 및 분류는 민원 담당관·120다산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실태 확인 및 모니터링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sup>1)</sup>에서 실시 중임.
- ※ 이에 따라 각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 현장민원을 신고·점검하는 현장민원 살피미를 운영중에 있음.

### 〈현장민원 개요〉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6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현장민원 살피미”사업 교육지원과 시민홍보 및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인지 여부와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 등이 생색내기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됨.

〈2023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1,051	
자치구 별 현장민원 운영	2023년 1~12월	30,880	현장민원 담당자 교육, 간담회 및 워크숍 등 진행, 대시민 홍보 등
운영실적 종합평가 및 시상	2023년 10~12월	171	평가 및 우수기관·공무원·자치구민 시상

-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 현장민원 살피미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예산지원 및 포상수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현장민원 살피미”용어가 “내 지역 지키미”, “시민불편 살피미”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용어정비를 통한 업무 영역의 구분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치구별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현황(25개 자치구 총 4,853명)〉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자치구명	구성인원
종로구	196	동대문구	140	노원구	310	강서구	200	관악구	210
중구	184	중랑구	168	은평구	164	구로구	166	서초구	181
용산구	173	성북구	201	서대문구	140	금천구	110	강남구	524
성동구	222	강북구	142	마포구	160	영등포구	180	송파구	270
광진구	150	도봉구	140	양천구	182	동작구	150	강동구	190

전문위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손 정 욱
------------	-------------